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72
----------	-------

발의연월일 : 2026. 3. 20.

발 의 자 : 김 윤 · 윤준병 · 임오경
이성윤 · 김 현 · 박홍배
남인순 · 오기형 · 진성준
이정문 · 이훈기 · 박지원
김남근 · 이수진 · 주철현
김현정 · 전진숙 · 채현일
강준현 · 박선원 · 김승원
박주민 · 이광희 · 이재강
박용갑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운용과 수탁자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자본시장 전반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책임투자과 주주권 행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수탁자책임 이행의무와 위탁 운용사에 대한 평가·관리 기준, 기금운용 관련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이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수급자의 이익 보호와 기금운용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선량한 관리자의무를 명시하고 금융당국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며, ESG 요소 고려를 원칙으로 삼아 기금의 장기적·안정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기금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운용사 선정·평가·계약해지 시 수탁자 책임 활동의 질적 요소를 중점 반영하고, 미흡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운용 구조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심의범위를 기금의 수탁자책임 이행평가, 위탁운용사 및 외부 자문기관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고, 회의록의 작성·공개와 예외적 비공개 요건 및 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책임투자·주주권 행사·수탁자책임 활동 및 위탁운용사·외부 자문기관 평가, 성과지표와 공시·보상체계를 포괄하는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전 과정에서 수탁자책임이 일관되게 구현되고 필수·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제102조제1항·제2항·제4항, 제102조의3, 제103조제1항·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03조의3, 제103조의4, 제105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의2 신설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제5호와 제6호”를 “제2항제6호와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 및 제4호”로,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한다”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제10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3(기금의 위탁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업무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용사를 선정·평가 또는 위탁계약의 해지를 하려는 때에는 수익률 등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책임투자 정책과 조직, 의결권 행사 및 주주참여 실적, 그 밖에 수탁자로서의 의무 이행 정도 등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적 평가 결과가 전체 평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함에 있어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실시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점검결과 및 최근 3년 이내 검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이행이 현저히 미흡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상설로 둔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한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심의·의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운용위원회는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을 변경하거나 미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03조의3제2항제2호라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기금의 수탁자 책임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마. 기금을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 위탁운용사의 수탁자책임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바.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의 자문의견의 적절성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다만, 전문위원회 위원 중 제10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4(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회의록) 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심의사항·발언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정보 등 공개할 경우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공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결로서 3년의 범위에서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범위,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0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평가·계약해지 기준 및 절차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와 그 밖의 수탁자 책임 활동 및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

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상장·비상장 주식, 채권, 대출, 부동산 등 자산군별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사항
3. 의결권 행사,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주주제안, 소송 제기 등 단계적 주주권 행사 절차 및 그 절차 단축 기준에 관한 사항
4.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 비중, 평가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의 자문의견에 대한 적절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단기·장기 성과 지표와 결과 보고 및 공시 기준, 그에 따른 보상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매매·대

여 · 투융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 3. (생략)

<신설>

4. ~ 7. (생략)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

1. ~ 3. (현행과 같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5. ~ 8.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③ 제2항제6호와 제7호-----

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
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
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
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
를 고려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신설>

-----.

④ 제2항제3호 및 제4호-----

-----고려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2조의3(기금의 위탁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업무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용사를
선정·평가 또는 위탁계약의
해지를 하려는 때에는 수익률
등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책
임투자 정책과 조직, 의결권 행
사 및 주주관여 실적, 그 밖에
수탁자로서의 의무 이행 정도

등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적 평가 결과가 전체 평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함에 있어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실시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점검결과 및 최근 3년 이내 검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이행이 현저히 미흡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

-----상설로 둔다.

1. ~ 3. (생략)

<신설>

4.·5. (생략)

② ~ ⑦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한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심의·의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운용위원회는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을 변경하거나 미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생략)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다. (생략)

<신설>

<신설>

<신설>

라. (생략)

3. (생략)

③ (생략)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기금의 수탁자 책임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마. 기금을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바.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의 자문의견의 적절성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사. (현행 라목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다만, 전문위원회

<신 설>

위원 중 제10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3조의4(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 회의록) 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심의사항·발언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정보 등 공개할 경우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공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결로서 3년의 범위에서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범위,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할 불가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평가·계약해지 기준 및 절차

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의2(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와 그 밖의 수탁자 책임 활동 및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

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상장·비상장 주식, 채권, 대출, 부동산 등 자산군별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사항

3. 의결권 행사,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주주제안, 소송 제기 등 단계적 주주권 행사 절차 및 그 절차 단축 기준에 관한 사항

4.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 기준, 평가비중, 평가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의 자문의견에 대한 적절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단기·장기 성과지표와 결과 보고 및 공시 기준, 그에 따른 보

상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